퇴직연금정기예금 특약

제1조(약관의 적용)

퇴직연금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목돈굴리기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예금과목)

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정기예금으로 합니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퇴직연금 사업자로 합니다.

제4조(계약기간)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으로 합니다.

제5조(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저 가입금액은 1원 이상으로 합니다.

제6조(재예치)

① 거래처가 요청하는 경우 이 예금의 만기일에 당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더한 금액을 재예치합니다. 재예치 기간은 당초 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정하며 재예치 이자율은 재예치일 현재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시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최초 신규 시 자동재예치를 신청하는 특약을 한 경우 매 만기 시마다 별도의 의사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약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한 운용지시서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퇴직연금정기예금 재예치 특약-

<u>퇴직연금정기예금 약관 제6조 ①에 따라, 이 예금의 매 만기일마다 별도의 의</u> 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재예치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상기 ①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재예치 의사 없음을 사전에 통지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재예치하지 않으며, 거래처의 별도 의사표시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7조(이자율의 적용)

① 이 예금은 예금일 및 재예치일을 이자율 결정일로 합니다. 단, 재예치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의 이자율을 재예치일의 이자율로 적용하고 재예치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을 재예치일로 합니다.

- ② 이 예금의 이자율은 이자율 결정일에 영업점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③ 이 예금의 이자는 만기일에 계산하여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제8조(중도해지 이자율)

- ①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예금주의 청구가 있을 때 지급함이 원칙이나 만기일 전 예금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금지급 청구가 있을 때에는 예금일 또는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예금일 또는 재예치일에 영업점에 고시된 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자율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② 전항에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예금일 또는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예금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고시된 이 예금의 기간별 약정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단, 예금일 또는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1.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의 사유
 -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3.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4. 그 밖에 천재, 사변 등으로 인하여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제9조(일부 해지)

- ① 이 예금은 만기 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일부 해지가 가능하며 자동 만기 연장된 경우에는 각 연장기간마다 만기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일부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자별로 만기 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일부 해지가 가능합니다.
- ② 전 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위한 예금 지급의 경우는 전 항의 일부 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
 - 2.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
- ③ 만기일 전에 일부 해지하는 경우 일부 해지 금액의 이자는 제8조에 따라 지급합니다.

제10조(거래제한)

이 예금은 담보제공, 질권설정, 양도가 불가하며 세금우대 및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